

온천법 일부개정법률안 (권향엽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1000
----------	-------

발의연월일 : 2025. 6. 23.

발 의 자 : 권향엽 · 문진석 · 박용갑
서영교 · 양부남 · 이병진
임미애 · 조인철 · 최민희
허성무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온천발견신고가 수리된 신고인으로서 해당 온천공이 있는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온천우선이용권자는 온천공보호구역 등에서 토지를 굴착하거나 온천의 이용을 우선하여 허가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음.

그런데 온천우선이용권자의 권리의 유효기간에 대한 규정이 없어, 시장·군수가 개발의사가 없는 온천우선이용권자가 한 온천발견신고 수리를 취소하지 않는 경우 해당 온천이 미개발 자원으로 방치될 우려가 있음.

이에 온천의 효율적인 개발·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온천우선이용권자의 권리의 존속기간을 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10년으로 설정하고, 개발 의사 등을 고려하여 5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등).

온천법 일부개정법률안

온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단서 중 “온천우선이용권자가 개발계획을”을 “온천우선이용권자가 그 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개발계획을”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취소할 수 있다”를 “지체 없이 취소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21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취소하여야”를 “지체 없이 취소하여야”로 한다.

제23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온천우선이용권자의 권리는 시장·군수가 제21조제2항에 따라 온천발견신고를 수리한 날로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존속하며, 시장·군수는 온천우선이용권자가 그 존속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면 제21조제4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을 고려하여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다음 날부터 5년 단위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제4항에 따른 온천우선이용권자의 존속기간 연장 신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30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23조제3항에 따른 온천우선이용권자의 권리 말소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온천우선이용권자의 권리 존속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온천발견신고가 수리된 온천우선이용권자의 권리의 존속기간은 이 법 시행일부터 산정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0조(온천개발계획의 수립) ① 시장·군수는 온천이 발견된 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온천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제21조제2항에 따라 온천발견신고를 수리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온천개발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도지사의 승인(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의 경우는 제외한다)을 받아야 한다. 다만, 시장·군수가 그 기간에 개발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거나 그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u>온천우선이 용권자가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지사에게 승인(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의 경우에는 수립을 말한다)을 신청할 수 있다.</u> ② ~ ④ (생략) ⑤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제10조(온천개발계획의 수립) ① ----- ----- ----- ----- ----- ----- ----- ----- ----- ----- ----- ----- ----- ----- ----- ----- <u>온천우선이 용권자가 그 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개발계획을</u> ----- ----- ----- ----- ----- ----- ----- ----- ----- -----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 -----

경우에 개발계획 또는 그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1. ~ 4. (생략)

⑥ ~ ⑧ (생략)

제21조(온천발견의 신고 등) ① ~ ③ (생략)

④ 시장·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온천발견신고의 수리를 취소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의 경우 온천우선이용권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로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3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취소를 유예할 수 있다.

1. ~ 5. (생략)

제23조(온천우선이용권자의 권리 등) ① · ② (생략)

<신설>

--지체 없이 취소하여야 한다.

1. ~ 4. (현행과 같음)

⑥ ~ ⑧ (현행과 같음)

제21조(온천발견의 신고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지체 없이 취소하여야-----.

1. ~ 5. (현행과 같음)

제23조(온천우선이용권자의 권리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른 온천우선이용권자의 권리는 시장·군수가 제21조제2항에 따라 온천발견 신고를 수리한 날로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존속하며, 시장·군수는 온천우선이용권자가 그 존속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면 제21조제4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을 고려하여 존속기간이

<u><신 설></u> 제30조(청문) 시장·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2. (생 략) <u><신 설></u>	<u>만료되는 다음 날부터 5년 단위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u> <u>④ 제4항에 따른 온천우선이용권자의 존속기간 연장 신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u> 제30조(청문) ----- ----- ----- -----. 1.·2. (현행과 같음) 3. <u>제23조제3항에 따른 온천우선이용권자의 권리 말소</u>
---	--